

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 안내

-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신청서 제출 시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거주 중인 경우, 아래 ①, ②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갱신 사실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
① 은행 발행 예금거래내역서(조회기간 임대차계약 최초 개시일 ~ 2026. 7. 1.)

*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임대인과 동일한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정기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

*은행에서 발급한 공식 예금거래내역서에 한하여 인정하며, 단순 거래조회 화면·캡처본·출력본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② 전입신고일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(본인 및 부모명의 임대차 계약 모두)

*신청서 제출일 기준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
*묵시적 갱신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 사실 확인 필요